

부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321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나518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321166 판결

전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재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4. 3. 19.

판결선고 2024. 4. 30.

주문

- 피고와 D 사이에 2020.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12,972,2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2,972,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20. 6. 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긴급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0. 6. 11.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D은 2020. 9. 9.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이상, 변제기의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제구청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F기관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D이 세무서에 신고한 2020년 연간 소득은 17,190,000원인 사실,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 2,000만 원의 채무 외에 E의 금융기관에 대한 4건의 대출금 1,772,577,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G은행에 대한 178,5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증여함으로써 피고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D은 버스 34대를 소유하고 있어 35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대출계약 또는 증여계약 당시 E이 부도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2022. 3.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이 버스 34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버스는 D 개인이 아니라 D이 대표자로 있는 E의 소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는 이 사건 대출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E이 파산할 것을 알면서도 체결되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E이 파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4. 1. 24.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12,972,292원인 사실, 2024.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7억 7,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을 초과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더 적은 금액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인 위 12,972,2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972,292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 제2항에 “12,972,929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액인 “12,972,292원”의 오타임이기록상 명백하다.